

제안요청서

- 경쟁력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방안 연구 -

2024. 4.

국토교통부

||| 목 차 |||

| | |
|--------------------------|----|
| I. 과업 개요 | 1 |
| II. 과업의 주요내용 | 2 |
| III. 제안 일반사항 | 5 |
| IV.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8 |
| V. 평가방법 및 기준 | 11 |
| VI. 보안대책 | 15 |
| VII. 예정공정표 | 17 |
| VIII. 관련 서식 | 18 |

1. 과업명

- 과업 명칭은 「경쟁력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방안 연구」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로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지역성장·균형발전 전략 필요
 - '20년에 수도권 인구(50.2%)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 추월하였고, 수도권의 사회적비용* 증가 및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추세
 - * (주거)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 ('21년 기준) : 수도권 (10.1배) > 전국 (6.7배)
(교통) 수도권 교통혼잡비용('20년 기준) : 34.8조 (전국 대비 60.4%)
 - ** 수도권 GRDP 추이 : ('10) 49.4% → ('20) 52.5%p
 - 지방의 청년층 인력유출*로 지역 경쟁력(일자리·생활여건 등)은 점차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 구조 우려
- 부·울·경, 충청권 등 일부 권역에서는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초광역 경제·생활권 조성 추진
 -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공론화되면서 이에 맞는 국토공간상 제시 요구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이(5년단위) 수립됐으나, 장기적(20년단위)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미 수립
- ☞ 규모·집적 경제 및 공간·산업·교통·관광 등 계획 간 연계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있는 지방을 위한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원 필요

3. 과업의 목적

- ①국내·외 초광역권 육성 정책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초광역권 공간구조 분석, 거점 육성 및 연계방안, 계획 표준안 제시 등을 통한 ②초광역권 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마련
-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 및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 등 유관계획 연계, 관련사업 우선지원 등 ③초광역권 지원전략 검토
- 권역별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④초광역권 정책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컨설팅 등 지원활동 수행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5. 추정가격 : 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II

과업 주요내용

① 국내·외 초광역권 육성 정책 평가

-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초광역권계획의 필요성 및 시사점 도출
 - 해외 초광역권 관련 그간 정책과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 분석
- 국내의 권역별 초광역 협력 추진동향 및 여건 검토
 - 초광역권 육성 위한 권역별 조직운영 현황, 계획수립 동향 등 검토
- 초광역권계획 수립 부진 원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제도·정책 문제점 진단하고 개선안 도출

② 초광역권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검토

○ 빅데이터(BigData) 등 데이터 기반 초광역권역 내 공간구조 분석

- 주요 초광역권에 대한 인구·산업거점, 생활인프라, 교통·물류 현황 등에 기반한 거점 및 연계 등 공간구조를 분석

* 정주인구 외에 기능별 수요에 따른 생활인구 이동 패턴 분석 포함

- 주요 초광역권에 대한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별 특화 등 발전전략 제시

○ 초광역권별 거점 육성 및 거점 간 연계 방안 제시

- 주요 초광역권내 주요 거점의 위계·기능별 특화 방안 및 교통·물류 등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 제시

* 예 : 국토부광역BRT, 환승센터, 광역도로, 도심융합특구, 투자선도지구, 복지부첨단의료복합단지, 과기부디지털융합특구, 인공지능융합집적단지, 산자부산학융합지구, 지역혁신클러스터 등

- 적용 사례를 종합하여 초광역권 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하여 지원방안 제시(지원 메뉴판 형태로 제시)

○ 지역개발사업의 초광역권 발전 기여도 측정·평가 체계 구축

- 지역개발사업의 초광역권 발전 효과·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계획 반영* 유도

* 인구, 출산율, 일자리수, GRDP 증대효과 등을 고려한 사업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급성 및 초광역권 측면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초광역권 계획 반영 검토

○ 지자체의 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준안 마련

- 국토기본법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의 항목별 주요 내용을 담은 표준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③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원전략 검토

-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평가 관련 개선과제 도출
 - 예비타당성 평가제도 등 현행 재정투자 평가제도 진단 및 초광역권 육성 및 투자 확대 위한 재정투자 평가제도 개선안 도출
- 초광역권계획의 실천력 제고 위해 국가가 수립하는 국토계획, 교통인프라 계획 등 유관 계획 및 특구제도와 연계 방안* 검토
 - *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각종 특구사업의 입지 선정시 초광역권 계획에 따른 전략 거점 지역을 우선 선정 등
 - 국토종합계획, 도로·철도·광역교통 등 국토·인프라 계획과의 연계 방안, 거점 육성 및 핵심 교통망 연계 사업 우선 반영 등 검토
- 초광역권 계획 활성화 및 집행력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지원 확대, 세제 감면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④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원활동 수행

-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 정책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초광역권계획 수립 의의·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정부 지원방안 제시, 지자체 요청 사항 의견 수렴
-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위한 초광역권계획 위원회 운영·심의 컨설팅
 - 위원회 구성·운영방법, 초광역권사업 검토 가이드라인 등 지원
- 초광역권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건 분석 및 발전전략 설정, 선도사업 도출 등 컨설팅 및 지원 활동 수행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은 과업 제안서 작성순서(별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된 작성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고 제안 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의거 정확하고 명료하게 A4용지 30매 내외로 한글로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e발주시스템으로 전자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장을 구분하여 제출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및 접수처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제출(e-발주시스템)

□ 유의사항

1.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2.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3.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자격(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계약 상대자 선정방법

1.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용역수행 업체 선정
-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2.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기술평가 점수+가격평가 점수)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1. 기술평가(80%)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
| 제안 업체 일반 현황 (20) | 기관평가 | ○ 기업신용평가 등급 | 10 | 계량 |
| | 인력 평가 | ○ 연구인력 보유 현황 ○ 참여 연구인력의 전문성 | 10 | 계량 |
| 과업 수행 능력 (80) | 과업 수행방법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과업수행방법의 창의성 및 타당성 | 30 | 비계량 |
| | 과업 수행 계획 [※]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방법 및 세부추진 계획의 적정성 ○ 과업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 | 20 | 비계량 |
| | 사업관리 | ○ 세부 과업별 공정계획의 타당성 ○ 보안관리, 문서관리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 15 | 비계량 |
| | 기타 | ○ 추가제안사항 등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 15 | 비계량 |
| 합 계 | | | 100 | |

※ 본 용역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조직은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2인, 연구보조원 1인으로 구성된 조직과 동등 이상의 조직(인원, 전문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과업수행계획은 최하점으로 평가함

나.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20점)

○ 기관평가(10)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10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10.0 |
| BBB+ | A3+ | BBB+ | 9.6 |
| BBB0 | A30 | BBB0 | 9.2 |
| BBB- | A3- | BBB- | 8.8 |
| BB+, BB0 | B+ | BB+, BB0 | 8.4 |
| BB- | B0 | BB- | 8.0 |
| B+, B0, B- | B- | B+, B0, B- | 7.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2 |

-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공고일 포함)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 (2) 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4)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는 본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체 경영상태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참여비율)+(B사 점수×B사 참여비율)...

○ 인력 평가(10)

- 연구인력 보유현황(5)

| 연구인력 보유현황 | 1인당 점수배점 | 배점기준 | 배점 |
|-----------|--------------|--|-----|
| 책임연구원 | 2점 × 보유인력수 | 평점 20점 이상 평점 18점 이상~20점 미만 평점 16점 이상~18점 미만 평점 14점 이상~16점 미만 평점 14점 미만 | 5.0 |
| 선임연구원 | 1.5점 × 보유인력수 | | 4.5 |
| 연구원 | 1점 × 보유인력수 | | 3.5 |
| 연구보조원 | 0.5점 × 보유인력수 | | 3.0 |

| 구 분 |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
| 기업, 단체 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책임컨설턴트 이상, 부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선임컨설턴트 이상, 과장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
| 대학 | -부교수 이상 | -전임강사 이상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석사과정 재학생, 연구수행 보조원 |
|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 이상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

※ 공고일 기준 수행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납입증명서)

※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시 각 참여사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 참여 연구인력의 전문성(5)

| 구 분 | 4인 이상 | 3인 이상 | 2인 이상 | 1인 미만 |
|-----|-------|-------|-------|-------|
| 배 점 | 5 | 4.5 | 4.0 | 3.5 |

※ 관련분야 선임연구원급 인력 수

다.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80점)

○ 항목별 평가 기준

| 항목 구분 | 평가 정도 | | | | |
|---------|-----------------|-------------|-------------|----------------|-------------|
| | 매우 우수 (100%) | 우수 (90%) | 보통 (80%) | 다소 미흡 (70%) | 미흡 (60%) |
| 과업 수행방법 | 30 | 27 | 24 | 21 | 18 |
| 과업 수행계획 | 20 | 18 | 16 | 14 | 12 |
| 사업관리 | 15 | 13.5 | 12 | 10.5 | 9 |
| 기타 | 15 | 13.5 | 12 | 10.5 | 9 |

라.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2. 입찰가격평가(2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제1656호 2023.9.12.)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는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을”의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발생한 불량 및 파지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며,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보안책임자 관리 하에 철저히 파기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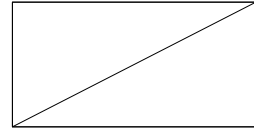
VII

예정 공정표

| 연구 내용 | 1M | 2M | 3M | 4M | 5M | 6M | 7M | 8M | 9M | 10M |
|--|----|----|----|----|----|----|----|----|----|-----|
| 1. 국내·외 초광역권 육성 정책 평가 | | | | | | | | | | |
| -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초광역권계획의 필요성 및 시사점 도출 | | | | | | | | | | |
| - 국내의 권역별 초광역 협력 추진동향 및 여건 검토 | | | | | | | | | | |
| - 초광역권계획 수립 부진 원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 | | | | | | | | |
| 2. 초광역권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검토 | | | | | | | | | | |
| - 빅데이터(BigData) 등 데이터 기반 초광역 권역 내 공간구조 분석 | | | | | | | | | | |
| - 초광역권별 거점 육성 및 거점 간 연계 방안 제시 | | | | | | | | | | |
| - 지역개발사업의 초광역권 발전 기여도 측정·평가 체계 구축 | | | | | | | | | | |
| - 지자체의 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준안 마련 | | | | | | | | | | |
| 3.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원전략 검토 | | | | | | | | | | |
| -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평가 관련 개선과제 도출 | | | | | | | | | | |
| - 초광역계획과 국토계획, 교통인프라 계획 등 유관 계획 및 특구제도와 연계 방안 검토 | | | | | | | | | | |
| - 초광역권 계획 관련 예산 편성·지원 확대, 세제 감면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 | | | | | | | | | |
| 4.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원활동 수행 | | | | | | | | | | |
| -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 정책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 | | | | | | | | |
| -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위한 초광역권계획 위원회 운영·심의 컨설팅 | | | | | | | | | | |
| -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자체 대상 여건 분석 및 발전전략 설정, 선도사업 도출 등 컨설팅 및 지원 | | | | | | | | | | |
|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 | | | | | ● | | | | ● |

1. 과업제안서(표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4.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사항
5. 보안서약서
6. 청렴계약서

<서식 1>



과업제안서

용역명 : 「경쟁력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방안 연구」

업체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 | | | |
|----------------------|-------|--------|-------|
| 1. 회사(기관)명 | | 2. 대표자 | |
| 3. 용역등록 분야 | | | |
| 4. 주 소 | | | |
| 5. 대표 전화번호 | | | |
| 6. 설립연도 | 년 월 일 | | |
| 7. 주요연혁 | | | |
| 8. 예산규모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 | |
| 9. 상시 종업원수 | | | |
|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 | | |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 분 야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주요경력(관련분야) | 학위 또는 자격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본과업 참여자 총괄표

| 분 야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주요경력 (관련 분야) | 학위 및 자격사항 |
|-----------|----|------|----|-----------------|--------------|
| 총괄 담당자 | | | | | |
| 보조 책임자 | | | | | |
| 과업 보조원 | | | | | |
| 기타 보조원 | | | | | |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 사본(재직증명서)

연구진 이력사항

| | | | | | | | |
|-------------|----|-------------------|--|---------------|-----|-----|---|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 학 력 | 전공 | | | 해당분야 경력 | | 년 월 | |
| 본용역 참여임무 | | | | 학위 또는 자격사항 | | | |
| 주 요 경 력 | | | | | | | |
| 용역명 (논문명) |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
| | | | | | | | |

- 주) 1. 본 과업 관련 경력만 기재
 2.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기재
 (참여율은 본 과업에서 차지하는 참여비중으로 기재)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별첨>

과업 제안서 작성 순서

1. 과업제안서 (양식 1 활용)
 - 제안서 내용(A4용지로 작성, '아래한글' 활용)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양식 2 활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양식 3 활용)
4. 연구진 이력사항 (양식 4~5 활용)
5. 첨부자료(이력사항 등 관련 증빙자료)
6. 기타 과업제안 관련 사항